

제332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의안번호 : 제429호
- 제 출 자 : 송파구청장
- 소 관 :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 사 일 : 2026. 6. 15.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429호로 2026년 5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6년 6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2026년 12월 31일) 도래로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건축안전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8조)
 - 2026년 12월 31일 → 2031년 12월 31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건축법」 제87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여성보육과(성별영향평가)

5. 검토의견 (전문위원 손지훈)

- 본 조례안은 2026년 5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429호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에 명시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2026년 12월 31일)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송파구 건축안전센터 설치 배경 및 연혁

-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1995년 6월),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강당 지붕 붕괴 사고(2014년 7월) 등의 건축물의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건축물 안전 확보와 관련된 업무의 체계적·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건축법」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설계도서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건축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 하지만 2017년 당시 법에 따른 센터의 설치의 의무사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센터의 설치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용산 상가 붕괴 사고(2018년 6월) 그리고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2022년 1월)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의 사고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대상을 지정¹⁾하는 내용으로

1) 「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0. 4. 7., 2020. 12. 22., 2022. 6. 10.>

1.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1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2.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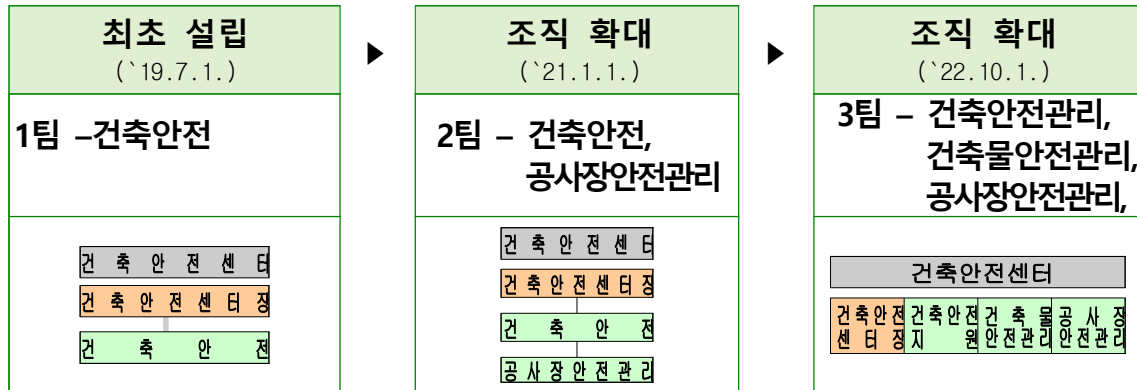
3. 삭제 <2019. 4. 30.>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 법을 개정(2019.4.30.)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송파구에서도 2019년 7월 1일부터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1】 송파구 건축안전센터 연혁



-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최근 강화된 건축물 안전 성능 확보를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건축법」에 도입되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지진·화재·노후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필요 자원 확보를 위하여 2022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건축안전특별회계회계는 ①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 ②「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0조제2항2)에 따른 사업비, ③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1. 시·도

2.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구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축허가 면적(직전 5년 동안의 연평균 건축허가 면적을 말한다)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 시·군·구

③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6. 10.>

[본조신설 2017. 4. 18.]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등의 사업 추진 시 사용하게 됩니다.

□ 조례 개정 주요 검토 내용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연장하지 않는다면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특별회계의 근거 및 효력은 상실됩니다.
- 또한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8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5년마다 고시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난 2023년 7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83호에서 송파구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대상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되었고, 2028년에 재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3., 2020.10.5., 2021.9.30.>

1.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의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 및 용자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3.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점검비
 4.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점검비
 5.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의 해체 및 해체보상비
 6.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7.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 지원비
 8. 제49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점검비 등
 9. 그 밖의 구청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 ③ 삭제 <2020.10.5.>
-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의 비율 등 법령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의 구청장이 소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 [본조신설 2018.7.19.]

- 「지방재정법」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송파구에서는 지난 4월 기획예산과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지방재정법」

-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 따라서, **안 제8조**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최근 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존속기한의 연장을 위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후 5년이라는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개정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